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07

발의연월일: 2022. 6. 16.

발 의 자:김영호·신정훈·이원택

김승남 · 김경만 · 한병도

황운하 · 김홍걸 · 서영교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주로 해외에 있는 등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하단부인 자금 인출책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와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의5, 제15조의2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 "이체, 송금 또는 인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억원 이하의"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자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개설하도록 하는 행위
- 5.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並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 시조치) ① -----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 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 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 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 -----이체, 송금 또 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 는 인출----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 제15조의2(벌칙) ①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 다. <단서 신설>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다만, 해당 범죄행 1.·2. (생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자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는 행 위
- 4.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개설하도록 하는 행

 위
- 5.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 상을 송신하는 행위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본문의 징역형과 벌 금형은 병과(並科)한다.